

---

#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

---

2018. 6



고용노동부

노동시간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

2018.6

고용노동부

## 목 차

1.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(인포그래픽) ... 1
2.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..... 19
3.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.... 47



# **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**

## **[ 인포그래픽 ]**



#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

일과 삶의 균형! 1,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



## 노동시간 단축, 왜 필요할까요?

장시간 노동, 지금 우리는...

- ◆ 연간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로 노동자의 건강권·휴식권 훼손, 삶의 질 저하,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



- ◆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

- ◆ 26개에 이르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453만명 근무 중

노동시간 특례업종

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



노동시간 단축,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장시간 노동 개선

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, 일자리 창출, 국가경쟁력 강화

##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

### 노동생산성 상승

- ◆ 주당 노동시간 1%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.79% 상승 ('17년, 예산정책처)

\*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 
1인당 노동생산성 1.5% 상승 ('17년, KDI)



### 일자리 창출 효과

- ◆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천명~17만 8천명 예상 ('17년, 노동연구원)



### 산업재해 감소

- ◆ 노동시간 1% 감소 시 재해율 3.7% 감소

\* 제조업은 노동시간 1% 감소 시 재해율 5.3% 감소 ('05년, 산업안전보건연구원)



# 300인 이상 기업, 특례제외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



## 1 노동시간 단축

노동시간,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

◆ 휴일·연장근로 포함, 최대 52시간

$$\text{주 52 시간} = \text{주 40 시간} + \text{연장근로 12시간}$$

◆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



### 시행시기

◆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

300인 이상 '18.7.1.

\* 21개 특례제외업종 '19.7.1.

50 ~ 300인 미만 '20.1.1.

5 ~ 50인 미만 '21.7.1.



##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

30인 미만 사업장,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 
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 
(노사 서면합의 시)



### 인정기간

'21.7.1. ~ '22.12.31.

##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

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

8시간  
이내 통상임금의  
100분의 50

8시간  
초과 통상임금의  
100분의 100

### 시행시기

'18.3.20.



## 4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

\* 노동시간 특례업종 :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

◆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

◆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

26개



5개

시행시기

'18.7.1.(주 최대 68시간 적용)

\* 주 최대 52시간은 '19.7.1.부터  
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

시행시기

'18.9.1.

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 
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 
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

특례유지  
종 5개

① 육상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

\*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

특례제외  
종 21개

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 
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 
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 
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  
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

##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

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 
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

시행시기

300인 이상 '20.1.1.

30 ~ 300인 미만 '21.1.1.

5 ~ 30인 미만 '22.1.1.

##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

◆ 1주 노동시간 단축

40  
시간



35  
시간

◆ 1주 연장노동시간 축소

6  
시간



5  
시간

시행시기

'18.7.1.

노동시간을 줄이는  
기업에 대해  
정부가 지원합니다

2018년 7월 1일 부터

**300인 이상**

주 최대 68시간 → 52시간

**특례제외업종**

무제한 → 주 최대 68시간



##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

###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

####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·개편



#### ◆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

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 
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



신규  
채용

증가노동자 수 1명당  
1~2년간 월 40~80만원 지원

임금  
보전

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 
기존 재직자 1인당 1~2년간  
월 10~40만원 지원  
(임금보전 비용의 80% 한도)

300인 이상 기업

#### ◆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

- \*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
- \*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

\*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

##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

- ◆ 기업의 신규채용 시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(70%)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추가로 받도록 現 제도와 연계



##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



### 청년추가고용장려금

중소·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연봉의 1/3 수준(900만원)을 3년간 지원(2,700만원)

- ◆ 30인 미만 : 1명 고용 시~
- ◆ 30~100인 미만 : 2명 시~
- ◆ 100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: 3명 고용 시~

###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

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고용 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

- ◆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: 월 60만원
- ◆ 대규모기업 : 월 30만원

###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
기업에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

- ◆ 우선지원 대상기업 : 월 80만원
- ◆ 중견기업 : 월 40만원

### 청년고용증대세제

청년 1명 신규고용 시 세금감면 기간 연장  
\*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

- ◆ 중소·중견기업 : 3년, 연 450~1,600만원
- ◆ 대기업 : 2년, 연 300~800만원  
(현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추진 중)

\*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



## 고용창출지원금 추가 지원 예시

※ 고용창출지원금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

### 청년추가고용 장려금

청년 1명 고용 시 최대 **7,690만원** 지원 (3년간 합산 금액)

- 일자리 함께하기 : 3,600만원(1명 × 100만원 × 36개월)
- 청년추가고용장려금 : 1,890만원(900만원 × 1명 × 36개월 × 70%)
- 고용증대세제 : 2,200만원(1,100만원 × 1명 × 2년)

※ 청년고용증대세제 입법 추진 중이며, 도입 시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

###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
신중년 1명 고용 시 최대 **5,812만원** 지원 (3년간 합산 금액)

- 일자리 함께하기 : 3,600만원(1명 × 100만원 × 36개월)
- 신중년 적합직무 : 672만원(80만원 × 1명 × 12개월 × 70%)
- 고용증대세제 : 1,540만원(770만원 × 1명 × 2년)

###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

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 고용 시 최대 **5,644만원** 지원 (3년간 합산 금액)

- 일자리 함께하기 : 3,600만원(1명 × 100만원 × 36개월)
-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: 504만원(60만원 × 1명 × 12개월 × 70%)
- 고용증대세제 : 1,540만원(770만원 × 1명 × 2년)



##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방지

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 
퇴직급여액 감소 예상 시
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 
-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 개정 중  
(’18년 6월)



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  
연금제도(DB) 도입 사업장의  
퇴직급여 손실 방지 위해  
별도 산정기준 마련



#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



## 1 생산성 향상 지원

###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



- ◆ 장시간 노동 개선  
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 
\* '18년 200곳 → 650곳
- ◆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 
특례제외업종 중심으로  
업종별 표준모델 개발

###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



- ◆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 
(K-앱시스트) 참여기업 선정 시  
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
- ◆ 공정·품질 기술개발 사업\*  
참여기업 선정 시  
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 
가점부여 등 우대('19.上~)
- \* 최대 5천만원 지원  
(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)

###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



- ◆ 스마트공장 구축, 생산성 향상  
컨설팅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 
기업에 우선 지원(~'22년, 1.5만곳)
- ◆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 
지원('18년 59억원)
- ◆ 스마트공장 운영·설계 인력양성 확대  
\* 스마트공장 석·박사과정 확대  
( '17년 3개 대학 → '18년 4개 대학)  
\*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,  
약 2,200여명 양성('18년)

## 2 일하는 방식 개선

###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



- ◆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 
\* '18년 6,500곳 → 8,000곳
- ◆ 노동시간 준수 관련 교육규모 확대(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)  
\* '18년 4,000명 → 9,000명

##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

근무혁신(노동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)  
실천기업에 대한  
인센티브\* 부여제도 도입('19년~)

\* (예시) 세제지원, 근로감독 면제,  
컨설팅 우선 지원 등 행정·재정적 지원



## 4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

### 간접노무비 지원

- \* 유연근무 활용 1인당  
주 5~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
- \*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·배포



# 필요한 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



## 1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

###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

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'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'\*  
으로 선정, 구인관련 애로사항\*\* 해소

\* 중점관리기업 : '17.12월말 기준 15,570개 기업

→ '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심 선정

\*\* 예)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 
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의  
집단 동행면접 지원



###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

온라인

워크넷에서 구직자에게  
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 
일자리정보 우선 제공



오프  
라인

장시간 노동업종 사업장 밀집지역에  
'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' 확대·운영  
→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

## 2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

###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

내일배움카드 >

1234 5678 9012 1234  
0920  
CARD

노동자의 역량개발 강화 위해  
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

\* (예시)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 
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

###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



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 
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

###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



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  
→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

\* ~'22년까지, 약 5만명

노동시간이 줄어들면  
같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



##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



###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

####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



####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

실태조사('18.6월~), 노사·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 
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


### 유연근로시간 제도 유형



#### 탄력적 근로시간제

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 연장,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 단축  
→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(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)

예시

◆ 2주 이내 단위

(1주) 60시간 : 48시간 + 12시간

(2주) 44시간 : 32시간 + 12시간

◆ 3월 이내 단위

최대 64시간 : 52시간 + 12시간

\* 3개월 평균 주 평균 52시간

\* 주 52시간 법정시행일 전에는 휴일근로 최대 16시간 추가 가능

#### 선택적 근로시간제

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 
정하고 각일, 각주의 노동시간과 출퇴근  
시각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

◆ 자율출퇴근제, 시차출퇴근제 등과  
유사하나, 일일 노동시간 조정 등을  
더 유연하게 활용



#### 재량 근로시간제

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 
업무(시행령에서 규정)에 한해 노사가  
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

◆ 신상품·신기술 연구개발  
· 인문·자연과학 연구  
· 정보시스템 설계·분석 등



주 최대 52시간으로  
노동시간을  
시행일보다 먼저 줄이면  
우대 지원하겠습니다

법정시행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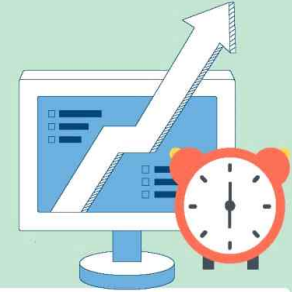
300인 이상 기업 '18.7.1.

\* 21개 특례제외업종 '19.7.1

50~299인 기업 '20.1.1.

5~49인 기업 '21.7.1.





##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

◆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법정시행일보다 **6개월 이상 먼저 단축** 시 지원금액·기간 확대

\*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이 주 52시간으로 조기단축 할 경우에도 적용



\*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, 1년까지 지원

\*\* 법 시행일이 49인 이하 기업은 '21.7.1.이므로 '18.7.1.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\*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



## 2 공공조달 우대



## 3 정책자금 우선 지원

◆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 
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

\* 금리·융자 한도 등 우대

◆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 
우선 심사대상에 추가



#### 4 설비투자비 용자 우선 지원

◆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\*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

\*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/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,  
3년 거치 5년 균등상환, 이율: 1~2%

◆ 제조업 공정혁신 등의 소요 자금을 우선 용자

\* '18년 3,300억원, 시설자금 70억원,  
운전자금 10억원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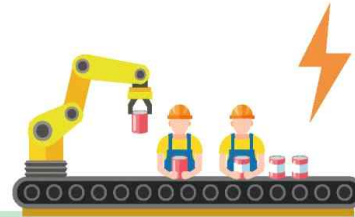


#### 5 산재보험료 할인

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에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

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를 10% 경감

\* 현행 : 위험성평가 인정 20%, 사업주교육 인정 10% 할인



#### 6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



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시  
가점 부여 등

#### 7 포상 우대

각종 선정·심사 시 가점 부여 등



◆ 「대한민국 일자리  
으뜸기업」 선정,

◆ 「가족친화기업」  
인증 심사 등

참고

주요 업종별 지원

① 노선버스업

- ◆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지도
- ◆ 운수종사자 양성·공급방안 마련
  - 운전자 양성사업, 군 운전경력자 활용, 채용설명회 등
- ◆ 노·사·정 논의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 마련('19년)



② 건설업

- 공공공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,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기간 조정 등 지침 마련
-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해외공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, 신규 수주현장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 활용 안내



③ 사회복지서비스업

- ◆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
- ◆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방안 추진
- ◆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방안 검토



④ ICT서비스·SW업

- ◆ 적정기간 산정 등 발주문화 개선 위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개정('18.4.26~ 입법예고)
- ◆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, 300인 미만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제공



⑤ 콘텐츠·방송산업

- 콘텐츠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적용 가이드라인,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·표준제작비 기준 마련
- 방송업 「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」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 포함



⑥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

- ◆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,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
- ◆ 지자체·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·감독\*
  - \* 교대인력 증원 지도,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등





##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별 문의처 현황

|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</b>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·개편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정책총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         |
|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퇴직연금복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청(지청)으로 문의         |
| <b>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</b>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사협력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사발전재단 (www.nosa.or.kr)<br>02-6021-1167, 1187  |
|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| 중기부<br>(이노비즈협회)                    | 기술혁신정책과<br>(전략사업실)              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정·품질 기술개발 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| 중기부<br>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              | 기술혁신정책과<br>(산학연기술평가실)           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| 중기부<br>(스마트공장추진단)<br>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| 기술혁신정책과<br>(보급확산팀)<br>(스마트기업지원실)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 / 전문기술인력 양성  | 산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일자리혁신과                         | 1577-0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기준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/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         |
| <b>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</b>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/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서비스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         |
|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적자원개발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         |
|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업능력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         |
|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                     | 중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재활용촉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노동시간 특례업종 특화 관리</b>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안내 /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기준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청(지청)으로 문의         |
| <b>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</b>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공조달 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재부<br>(조달청)                       | 계약제도과<br>(구매총괄과)                 | 044-215-21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안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계제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2100-3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판로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책은행 자금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금융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2100-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/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       | 중기부<br>(중소기업진흥공단)                  | 기업금융과<br>(기업금융처)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융자지원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정책총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         |
| 산재보험료 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재예방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국인력 배정 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인력담당관실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<br>* 자세한 내용은 관할 청(지청) 지역협력과(팀)로 문의 |
|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우대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자리정책평가과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객상담센터 1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우대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족문화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2100-6000<br>*www.ffsb.kr(가족친화인증신청 홈페이지)    |

\* 종합적인 지원대책 관련 내용은 관할 청(지청) 종합점검추진단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--

#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

---

2018. 5. 17.

관 계 부 처 합 동



# 순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 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 | 23 |
| II . 기본 방향 .....                  | 24 |
| III . 세부 추진방안 .....               | 25 |
| 1.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.....        | 25 |
| 2.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.....            | 27 |
| 3.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.....    | 28 |
| 4.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.....         | 30 |
| 5.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·관리 .....       | 32 |
| IV . 추진계획 .....                   | 39 |
| V . 세부 추진일정 .....                 | 41 |
| [붙임1]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.....       | 43 |
| [붙임2]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및 해외 사례 ..... | 44 |



## I . 추진 배경

-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,052시간('16년)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, 장시간노동 관행 만연

\* 멕시코 2,348시간, 獨 1,298, 日 1,724, 美 1,789, OECD 평균 1,707

-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,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

-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·생활 균형 및 1,800시간대 노동 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

- 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(68→52시간), 특례업종 축소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금년 2월 국회를 통과, 3.20일 공포

- 노동시간 단축입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-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나,

-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및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

- ➡ 이에 노·사 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

“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. 정부·기업·노동자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.”

“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·노동자 부담 증가... 임금체계 개선, 생산성 향상 등 기업·노동자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” (18.3월, 대통령 말씀)

## Ⅱ. 기본 방향

- ①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
- ②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
- ③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

| 추진 방안                   | 주요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규채용 · 임금보전<br>지원 강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확대 · 개편</li> <li>·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기단축 기업<br>우대 지원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공조달 · 정책자금 ·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</li> <li>· 산재보험료 할인</li> <li>· 외국인력 배정 및 포상 우대</li> </ul>  |
| 생산성 향상 지원<br>일하는 방식 개선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</li> <li>·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</li> <li>· 근로조건 자율개선,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</li> </ul> |
| 구인난 완화 위한<br>인력 지원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</li> <li>·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례제외 업종 등<br>특화 지원 · 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</li> <li>· 주요 업종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Ⅲ. 세부 추진방안

#### 1.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

◆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·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 추진

#### □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·개편

-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강화

##### 【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개요 】

- (신규채용 지원)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~2년간 월 40~80만원 지원
- (임금보전 지원)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, 기존 재직자 1인당 1~2년간 월 10~40만원 지원 (임금보전 비용의 80% 한도)

- (300인 미만 기업)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확대

\*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이 주52시간으로 조기단축할 경우에도 적용

##### < 지원내용 >

- ▲ 신규채용 1인당: (현행) 월 40~80만원, 1~2년 → (개선) 월 60~100만원, 1~3년
- ▲ 임금보전 1인당: (현행) 월 10~40만원, 1~2년 → (개선) 월 10~40만원, 1~3년

- (300인 이상 기업\*)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(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)

\* 상호출자 제한 기업,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제외

##### < 지원내용 >

- ▲ 신규채용 1인당: (현행) 월 40만원 → (개선) 월 60만원
- ▲ 임금보전 1인당: (현행) 500인 이하 제조업 → (개선) 500인 이하 제조업+특례제외업종

- 기업의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도 추가(70%)로 받을 수 있도록 現 제도 연계 지원

**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등 】**

- (청년추가고용장려금)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, 연봉의 1/3 수준(900만원)을 3년간 지원
  - ▲ (규모) 3년간 2,700만원(1인당 900만원)
  - ▲ (최저 고용요건)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, 30~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, 100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
- (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)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
  - \*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(최대 1년간)
- (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)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
  - \*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(최대 1년간)
- (청년고용증대세제) 청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,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
  - \* (중소·중견) 3년, 1인당 연 450~1,600만원, (대기업) 2년, 1인당 연 300~800만원

**□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**

-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(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 개정, '18.6월)
  - ※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(IRP)에 적립·운영토록 함으로써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
-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(DB)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토록 적극 지도

## 2.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

◆ 선제적인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,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유도

### □ 공공조달 우대

-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추진 ('18.下~)

### □ 정책자금 지원

-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하고, 금리·융자 한도 등을 우대 ('19년~)
-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('18.下~)

### □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

- 조기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\*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

\*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/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,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, 이율: 1~2%

-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융자

\* '18년 3,300억 원, 시설자금 70억 원,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

### □ 산재보험료 할인

-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할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% 경감 ('18.下~)

\* (현행) 위험성평가 인정 20%, 사업주교육 인정 10% 할인

## □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

-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 ('18.下~)

## □ 포상 우대

-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\*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('19년~)

\*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대해 인증패 수여, 금융·정책자금 지원, 세액공제, 세무조사 유예 등 행·재정적 지원

### 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 및 부처 간 공유 】

- 노동부(지방관서)에서 조기단축 확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'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'를 발급
- 노동부에서 확인서 발급 기업 명단을 관계부처 간 공유, 사업주는 확인증을 제출하여 조기단축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 수혜

## 3.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

- ◆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등 제공 및 근무형태 개선 지원

### 1 생산성 향상 지원

## □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

-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('18년 200 → 650개소, 추경)
-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 모델\*을 개발하고, 지방관서와 연계하여 컨설팅 필요 사업장 적극 발굴

\* 노·사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델 개발 중(~'18.6)

## 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

-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\*(K-앱시스트) 참여 기업 선정 시,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('18.下~)

\* 디지털 기술(VR, AR 등)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내부인력에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을 통한 기술체계화(매뉴얼화) 지원

- 공정·품질 기술개발 사업\*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('19.上~)

\* 최대 5천만원 지원 (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)

## □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

-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(중기부, ~'22년 1만5천개소) 및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(산업부, '18년 59억)

- 스마트공장 운영·설계 인력양성 확대 등 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연구·기술인력 양성 확대

\* 스마트공장 석·박사과정 확대 ('17년 3개 → '18년 4개 대학)

\*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, 약 2,200여명 양성 ('18년)

## 2 일하는 방식 개선

### 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

-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,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('18년 6,500 → 8,000개소, 추정)

- 신설·소규모 등 취약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노동시간 준수 관련 인식 제고 및 자율개선을 위한 교육 규모 확대 ('18년 4,000 → 9,000명, 추정)

## □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

- 노동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추진 ('19년~)

### < 인센티브제 단계별 세부구성(안) >

| 단 계          |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획수립<br>및 이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항*으로 구성된 「근무혁신 계획」 수립<br/>* 교대제 개편, 연차휴가 활성화, 유연근무 도입·활용 등</li> <li>▪ 근무혁신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, 계획 이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, 실행 정도, 성과 등을 평가하여 S, A, B 등 그룹으로 구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센티브<br>및 홍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세제지원, 근로감독 면제, 컨설팅 우선지원 등 그룹별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설계하여 기업이 상위 그룹을 획득할 유인 확보</li> <li>▪ 근무혁신 마크를 부여하여 구인·구직 취업 포털, 제품·서비스에 활용, S등급의 기업은 근무혁신 30대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례 확산</li> </ul> |

## □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

-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제작·배포 및 우수 사례집 발간

※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주 5~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'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'도 지속 시행

## 4.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

◆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직업훈련 확대 및 일자리 매칭 강화 등을 통해 필요 인력 적시 지원

### 1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

## □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

- 역량 개발강화 유도를 위해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\* 추진

\* (현행) 우선지원 대상기업·비정규직·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등 → (개선)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

## □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

-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 추진

## □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

-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 (~'22년 약 5만명)

## 2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

### □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

-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“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\*”으로 선정 · 지속 관리함으로써 구인관련 애로사항\*\* 신속 해소

\* '17.12월말 기준 15,570개 기업 → '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선정

\*\* 예)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고용센터가 구직자들의 집단 동행면접 지원

- 일터혁신 컨설팅,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등 수행과정에서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고용센터와 함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

### □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

- (온라인)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은 워크넷 상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 (구인·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)

- (오프라인) 장시간 노동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‘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’를 확대 · 운영하여,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 지원

- 순회출장센터별로 이동수단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 (이동수단 임차규모 확대 추진)

\* 동행면접, 구인발굴을 위한 현장방문(주2회) 등에 활용

## 5.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·관리

◆ 특례제외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 과정 상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들의 노동시간 관련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특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

### 1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

#### □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

-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법 취지에 맞게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매뉴얼(도입 절차, 활용 사례 등) 제작·배포 ('18.6월 2만부)
- 지역·업종별 노·사 간담회,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·안내 실시  
\* 제도 활용도: 탄력적 근로시간제 3.4%, 재량근로제 4.1% ('17년, 10인 이상)

#### □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

-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('18.6월~)하고,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
\* 개정법 부칙에는 '22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규정

### 2 주요 업종별 지원

◆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'21.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

\* 주요 특례제외 업종 50인 미만 사업체수 비율('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): 사회복지서비스업(97.7%), 연구개발업(90.8%), 방송업(84.2%)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95.5%), 하·폐수처리업(97.4%)

-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, 컨설팅을 통한 일터 혁신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

## (1) 노선버스업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道 地域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
- 금년 7월부터는 주 최대 68시간제가 적용되나, 시민 안전을 위해 면허·교육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곤란
  - 노·사·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
- 아울러, 내년 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향후 격일제·복격일제\*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1일 2교대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

\* 격일제: 1일 근무 후 1일 휴무, 복격일제: 2~4일 근무 후 1~2일 휴무

### □ 지원대책

- 금년 7월까지 현재의 운송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연 근로시간제를 활용토록 지도하고, 운수종사자 양성·공급방안\* 등 추진
  - \* 운전자 양성사업, 군 운전경력자 활용, 채용설명회 및 취업포털 운영 등
  - 아울러 노·사·정 집중교섭을 통해 5월 중으로 제도 연착륙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을 마련, 현장 혼란 최소화
    - ▲ 노동자: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운영에 적극 협조
    - ▲ 사용자: 현 운송수준 유지와 노동자 임금감소 보전 및 신규채용 노력
    - ▲ 정 부: 노·사의 연착륙 노력에 대해 행·재정적으로 적극 지원
- 향후 임금·노동시간 적정화, 인력 충원 등 노동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이 확보되고,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·사·정 논의를 통해 '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' 마련 (~'19년)

## (2) 건설업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건설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2시간으로 평균적으로는 52시간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,
- (국내공사) 주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 대두
  - \* 공공기관의 예산배정 관행과 옥외작업의 특성 상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
- (해외공사) 업체는 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, 노동계는 법적용 필요성 주장
  - \* 중동 등의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업체는 인력 추가파견 비용 증가 등을 우려

### □ 지원 대책

- (국내공사)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(기재부, '18.6월)
  - 민간공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국토부, '18.6월)
    - ※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·감리 등 적정대가 검토
- (해외공사) 기 수주현장에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
  - 신규 수주현장에는 정부의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하여 추가 인력의 채용 및 파견을 유도
    - ※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시 해외건설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·사 의견수렴

### (3) 사회복지서비스업

#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금년 7.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주시설 종사자 증원이 필요하며,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애로 예상

#### □ 지원대책

- (거주시설)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의 단계적 충원, 개별 사회복지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\* 마련('18.下)

\* 교대근무 조별 표준근무표, 시간대별(최대서비스 제공시간, 야간 등) 근무인력 기준

- (장애인활동지원) 고위험 최종증 장애인\*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\*\* 추진

\*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·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(800명) ~ 독거 및 취약가구 최종증 장애인(4,000명)

\*\* 교대근무 독려,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목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의 예외적 허용,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(지자체 협조) 등

-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\* 제작·배포,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칙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노력

\*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이용 시 주의점,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서, 상호협력 동의서(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) 개정 등

- (보육교사) 특정시간대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 사업지침 우선 변경\*,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검토

\* 예시) ① 낮잠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, ② 보조교사 업무범위 확대, ③ 맞춤반 하원 이후 혼합반 편성기준 완화, ④ 특별활동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등

-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서류 간소화 등 평가인증 부담 완화도 검토

## (4) ICT서비스 · SW업

\* 통신업, 소프트웨어 개발업 · 공급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· 관리업, 정보서비스업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대체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나,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성수기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
  - 촉박한 용역기간,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과 소프트웨어 개발 · 업그레이드 시 업무량 집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요구

### □ 지원대책

- 적정기간 산정, 요구사항 상세화, 과업변경 최소화 등 발주문화 개선을 위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개정 추진 ('18.4.26~ 입법예고)
- 300인 이상 대기업은 업계와의 소통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
  - 300인 미만 기업은 주 52시간 단계적 적용 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

※ 총 25,740개사 중 300인 이상은 113개사('16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 / 통계청, '17.12월)

## (5) 콘텐츠 · 방송산업

\*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방송업, 광고업, 게임업 등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부족한 제작비를 장시간 근로로 해결하는 등의 제작관행과 작품출시 직전, 마감 준수를 위한 집중 근무 등으로 52시간 초과근무 사례 발생
  - 중소규모 기업이 많아 적용 준비기간상 여유는 있으나,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신규 인력채용 시 인건비 부담, 제작비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·구인난 우려

\* 5인 이상 콘텐츠 업체 15,606개사 중 50인 미만은 14,130개사로 90.5%

## □ 지원대책

- (콘텐츠)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('18.7월~),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('18.下) 및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·활용('19년)
  - 제도변경 사항 홍보 및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관합동 일자리 체질개선 TF 개최 등 현장소통 강화 ('18.5월)
  - 콘텐츠 분야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('18.下)
    - \* 일터혁신 컨설팅, 전문 인력양성 강화, 상담채널 마련, 민관합동 일자리 체질개선 캠페인 등
- (방송업) 외주제작 관련 인권선언문 제정 등 방송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자율준수 노력 지원
  - 방송사·외주제작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'방송업계 독립 창작자 인권선언문'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의 내용 포함 ('18.下~)
  - 방송제작 특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대응 간담회·설명회 등 방송업계 소통 강화 ('18.上)
  - 방송업계 노동시간 단축 우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영세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부담 경감 검토 ('19년)

## (6)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

- 일부 주·야 교대제 24시간 가동시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시 시설별 교대조 근무인력(현장직·운송직 등) 0.5~1명 증원 필요
  - ※ 전체 하수처리시설(3,969개소) 중 77%(3,070개소),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(198개소) 중 95%(188개소)가 지자체-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 → 노동시간 단축 대상 (5인이상) 사업장은 각각 386개소(6,695명), 63개소(863명)

- (하수처리시설) 지자체 대행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, 비용절감을 위해 경력직 고급 기술자를 저임금 초급기술자로 대체할 우려
- (공공폐수처리시설) 처리시설 운영비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, 이용 기업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 필요
- (폐수처리 · 대행업) 초과근로수당 감소로 노동자 급여삭감 우려 및 폐수운반 차량 증차비용 발생 예상

#### □ 지원대책

- 인건비 산정기준\* 현실화 및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

\*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개정 ('18년 말)

- 지자체와 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 · 감독\* 및 영세업체 대상 범정부 지원대책 우선적용 등 추진 ('18.下~)

\* 교대인력 증원 지도,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,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 적정 재산정 등

## IV. 추진 계획

- ◆ 금년 7.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업종별로 관련부처가 집중 지원·관리 추진
- ◆ 개정법 및 지원대책의 현장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물론, 주요 업종별,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보완·관리

### ① 종합적 현장 지원·관리

- 지원대책의 내실있는 집행과 현장의 밀착 지원·관리를 위해 「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\*」을 구성·운영 ('18.4월~)

\* 근로감독관,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팀,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

-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지도·점검, 행·재정적 지원, 간담회·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 현장 지원·관리 추진

\* 금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에 개정법과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며, 컨설팅, 인력매칭 등 필요한 지원도 연계·실시

### ② 주요 업종별 지원단 운영

- 특례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별로 소관 부처에서 지원단 구성\*·운영 (노동부 협조)

\* 업종별 협회, 종사자단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 (현재 노선버스, 방송콘텐츠 업종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)

-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 강구 ('18.4월~ )

### ③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

- 노동부·기재부(차관) 공동 주관 관계부처 TF를 활용, 현장 안착 시 까지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\* 등을 지속 추진

\* 업종·직종별 특수성, 특례제외 업종 등에 대한 특성도 고려

#### 4 사회적 인식 제고

- 각 부처가 소관 업종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, 개정법·지원대책의 주요 내용과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안내·홍보 (노동부 협조)

\* 장·차관 사업장 방문, 지역별 노사 간담회·설명회 개최, 모범사례 발굴·홍보 등 실시

- 종합점검추진단을 통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·홍보, 장·차관 해당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

- KTV 등 TV매체, '청년기자단'(노동부 운영) 정책기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 사업장 홍보

- TV 공익광고 송출(5.1.~, KBS1·MBC·JTBC) 및 대담·퀴즈프로 진행, KTX·전광판 홍보(5.1.~) 및 온라인 홍보\* 강화

\* 인포그래픽, 카드뉴스(청년, 여성, 중장년들의 삶의 변화를 스토리로 구성·홍보), 모바일 퀴즈 이벤트, 홍보영상 송출 등

- '일·생활 균형 실천선언식\*' 등을 통해 '정시퇴근' 등 일·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

\* 고용노동부, 노사단체, 주요 기업 등 참여하여 일·생활 균형 실천선언(5.24.)  
→ (핵심 메시지) ▲정시 퇴근 ▲휴가 활성화 ▲근무제 유연성 확보 등

## V. 세부 추진일정

|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처          | 일정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1.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</b>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•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·개편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6월~ |
| <b>2.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</b>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• 공공조달 우대                       | 기재부, 행안부, 중기부 | '18.下~  |
| • 국책은행 자금지원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           | '19.上~  |
| •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                | 중기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                  | 중기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산재보험료 할인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외국인력 배정 우대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우대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下~  |
| •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우대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| '19.上~  |
| <b>3.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</b> |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•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| '18.下~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•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       | 중기부 | ‘18.下~  |
| • 공정·품질 기술개발 사업 지원         | 중기부 | ‘19.上~  |
| •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           | 중기부 | ‘19.上~  |
| •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     | 산업부 | ~‘20.   |
| • 전문기술인력 양성                | 산업부 | ‘18.~   |
| •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8.下~  |
| •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9.上~  |
| •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8.下~  |
| <b>4.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</b> |     |         |
| •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9.上~  |
| •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9.上~  |
| •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            | 중기부 | ~‘22.   |
| •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       | 노동부 | ‘18.下~  |
| •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8.下~  |
| <b>5. 노동시간 특례업종 특화 관리</b>  |     |         |
| •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안내          | 노동부 | ‘18.6월~ |
| •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           | 노동부 | ‘18.6월~ |

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 감축

- ▲ 300인 이상: '18.7.1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'19.7.1.부터 시행),
- ▲ 50~300인 미만: '20.1.1, ▲ 5~50인 미만: '21.7.1

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 시 특별연장근로(8시간) 한시적 인정 ('21.7.1~'22.12.31)

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(공포 즉시 시행)

\*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 100%

④ 특례업종(26→5개) 대폭 축소('18.7.1 시행), 존치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('18.9.1 시행)

| 특례존치(5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례제외(21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육상운송업<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외>, ②수상운송업, ③항공운송업,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, ⑤보건업 | ①보관 및 창고업,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, ③도매 및 상품 중개업, ④소매업, ⑤금융업, ⑥보험 및 연금업,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⑧우편업, ⑨전기통신업, ⑩교육서비스업, ⑪연구개발업,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⑬광고업, ⑭숙박업, ⑮음식점 및 주점업, ⑯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⑰방송업, ⑱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, ⑲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, ⑳사회복지서비스업, ㉑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|

⑤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(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)

- ▲ 300인 이상: '20.1.1, ▲ 30~300인 미만: '21.1.1, ▲ 5~30인 미만: '22.1.1

⑥ 연소자의 1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, 연장노동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(시행: '18.7.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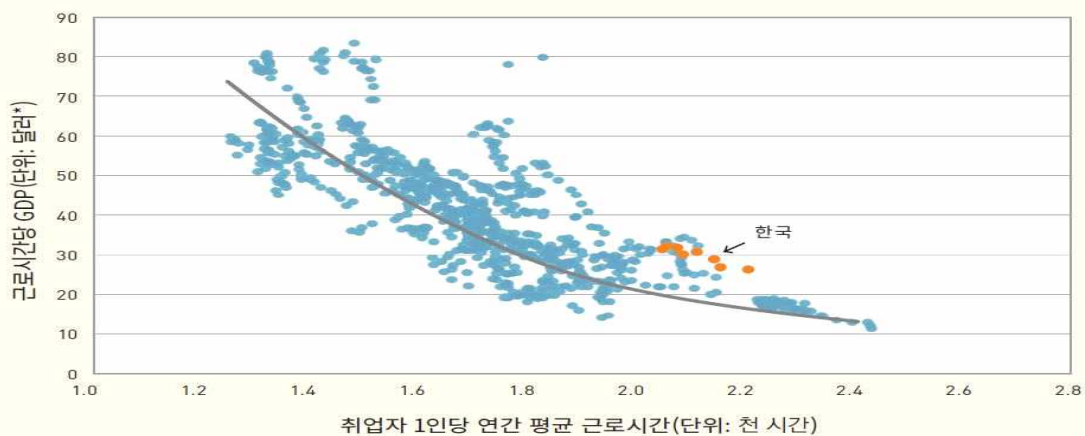
⑦ 부대의견 및 부칙: 5개 특례존치업종, 공휴일의 민간 적용,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·지원방안 마련

## 1.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

### □ 노동생산성 영향

- (해외) '90~'16년 기간 중 35개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과 노동시간 당 부가가치 산출(GDP) 간 음(-)의 상관관계 존재 ('17년, KDI)

그림 1.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(1990~2016년)



주: \*2010 purchasing-power parity.  
자료: The Economist(2014. 12. 9)의 보도내용을 OECD 통계DB를 이용하여 일부 수정.

- (국내)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1인당 노동생산성 1.5% 상승 ('17년, KDI)하였으며, 주당 노동시간 1%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.79% 상승 전망 ('17년, 예산정책처)

### □ 일자리 창출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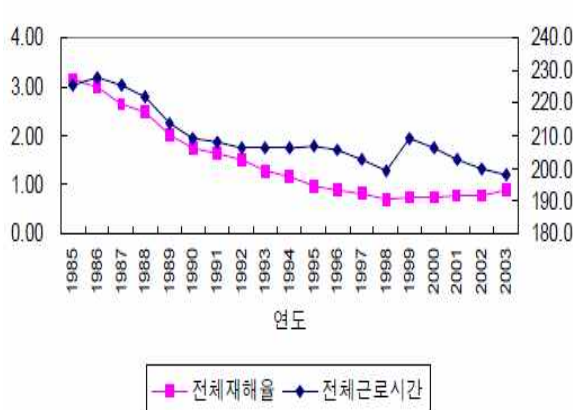
-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은 최대 137천명~178천명 예상 ('17년, 노동연구원)

| 구 분     | 해당노동자<br>(천명) | 평균노동시간<br>(시간/주) | 주52시간 도입시 신규채용(천명) |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52시간 노동자           | 40시간 노동자 |
| 전체      | 1,033         | 58.9             | 136.7              | 177.8    |
| 5~49인   | 532           | 58.8             | 69.4               | 90.3     |
| 50~299인 | 350           | 59.3             | 49.0               | 63.8     |
| 300인 이상 | 151           | 58.4             | 18.6               | 24.2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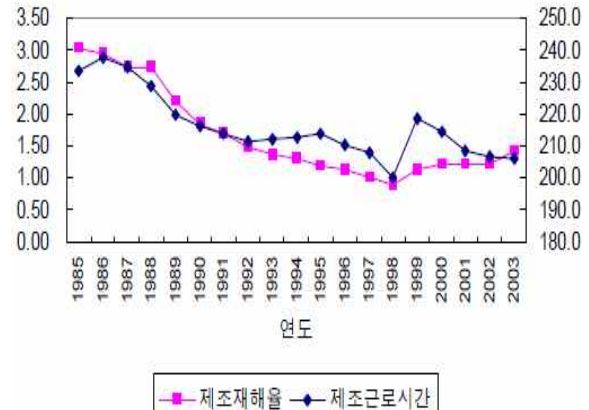
## □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

- 노동시간 1% 감소 시 재해율은 3.7% 감소, 제조업은 노동시간 1% 감소 시 재해율 5.3% 감소 ('05년, 산업안전보건연구원)

< 노동시간과 재해율 변화(전산업)>



< 노동시간과 재해율 변화(제조업)>



\* 노동시간 조사 대상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('98년)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('99년)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 증가

## 2. 해외 사례

- 독일, 프랑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증가 ('08년 한국노동연구원), 이탈리아는 실업률이 감소하는 경향 ('01년 IMF)

| 대상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독일 철강산업('84)<br>: 주 40→38.5 시간 | · 1984~89 기간은 <u>임시근로자의 고용을 0.3~0.7% 증가시켰고, 상용근로자 고용은 0.2~0.3% 증가</u>        | Hunt<br>(1996, 1999)          |
| 프랑스('82)<br>: 주 40→39          | · <u>14,000~28,000개의 순고용 창출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Marchand et al.<br>(1983)     |
| 프랑스('96~'00)<br>: 주 39→35      | · 1996~2000 기간의 총 1,375,000개의 고용 창출 중에서 <u>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수는 240,000개로 분석</u> | Commissariat<br>General(2001) |
| 이탈리아('97~'98)<br>: 주 48→40     | · 노동시간 단축 이전('94~'97) 실업률은 11.93이었으나, 노동시간 단축 이후 ('98~'01) 실업률은 10.60        | IMF(2001)                     |





# **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**

**2018. 5.**

**관 계 부 처 합 동**





## 목 차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강화 .....         | 51 |
| 2. 現 지원제도와 연계 .....             | 55 |
| 3. 퇴직급여제도 개선 .....              | 60 |
| 4.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시 우대 .....       | 62 |
| 5. 국책은행 자금지원 우대 .....           | 64 |
| 6.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.....           | 65 |
| 7.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용자 지원 .....    | 66 |
| 8.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.....            | 68 |
| 9. 산재보험료 할인 .....               | 69 |
| 10. 신규 외국인력 배정 우대 .....         | 72 |
| 11.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가점 ..... | 74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2.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..... | 76 |
| 13. 일터혁신 지원 .....              | 77 |
| 14.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.....       | 79 |
| 15.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.....        | 81 |
| 16.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.....         | 85 |
| 17.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.....        | 87 |
| 18.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.....          | 88 |
| 19.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.....         | 91 |
| 20.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.....        | 93 |
| 21.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.....         | 95 |
| 22. 일자리매칭 강화 .....             | 96 |
| 23.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.....         | 98 |

※ 제목 옆 페이지 수는 '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' 기준

## ① 지원강화 방안: 총괄

| 구분          | <500인 초과> |                   | < 300인 이상-500인> |              |         | <300인 미만>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법정시간축<br>단축 | 신규채용      | 60만원 1년           | 신규채용            | 제조           | 비제조     | 신규채용               | 제조                 | 비제조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80만원, 2년     | 60만원,1년 |                    | 80만원, 2년           | 80만원, 1년 |
|             | 임금보전      | -                 | 임금보전            | 제조 및<br>특례제외 | 비제조     | 임금보전               | 제조 및<br>특례제외       | 비제조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40만원, 2년     | 40만원,1년 |                    | 40만원, 2년           | 40만원, 1년 |
| 조 단<br>기 축  | 신규채용      | 특례제외업종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신규채용    | 제조 및<br>특례제외       | 비제조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| 60만원, 법정시행일까지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100만원<br>(법정시행일까지) | 100만원<br>(법정시행일까지)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임금보전      | 특례제외업종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임금보전    | 제조 및<br>특례제외       | 비제조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| 40만원, 법정시행일까지(2년)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40만원<br>(법정시행일까지)  | 40만원<br>(법정시행일까지)  |          |

○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\*

## &lt;신규채용&gt;

- 300인 미만 기업: : 現 월 80만원, 1~2년 → 改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, 법정시행일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

\* 법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, 1년까지 지원

-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: 現 월 40만원, 1년 → 改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을 지원, 법정시행일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(총 2년)

## &lt;임금보전&gt;

: 現 월 40만원, 1~2년 → 改 법정시행일\*까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

\* 법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, 1년까지 지원

## ○ 300인 이상 기업

\*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신규채용: 現 월 40만원, 1년 → 改 월 60만원, 1년
- 임금보전 : 現 500인 이하 제조업종만 2년 지원 → 改 500인 이하 제조업종이외에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

## ②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

※ 노선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에 따라 지원

|          |      | 법정근로시간 단축 | 52시간 조기단축*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500인 이상  | 신규채용 | 60만원, 1년  | 60만원, 법정시행일  |
|          | 임금보전 | 40만원, 1년  | 40만원, 법정시행일  |
| 300~499인 | 신규채용 | 60만원, 1년  | 60만원, 법정시행일  |
|          | 임금보전 | 40만원, 2년  | 40만원, 법정시행일  |
| 300인 미만  | 신규채용 | 80만원, 1년  | 100만원, 법정시행일 |
|          | 임금보전 | 40만원, 2년  | 40만원, 법정시행일  |

\* 조기단축의 경우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2년 지원

## ○ 500인 이상 기업 임금보전

: 現 지원 불가 → 改 임금보전 실시(월 최대 40만원, 1년)

## ○ 임금보전 지원 범위 확대

: 現 신규채용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 → 改 신규채용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임금보전 실시

## □ 향후 계획

-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에 관한 고시 개정('18.6월)
- 지방관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배포('18.6월)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
## 1. 인건비 지원

○ 지원대상: 모든 사업주(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대규모기업)

\* 지원 제외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○ 지원요건

❶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,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대제<br>도입 확대 |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“교대제”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(4조 이하에 한함)하고,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<br>※다만,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근로시간<br>단축제 |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·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(휴일근로시간 포함)이 2시간 이상 단축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자리순환제 |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 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“일자리 순환제”를 실시하고,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❷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

-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

- 증가근로자수 = (제도 도입·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) - (제도 도입·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)

\*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, 소수점 이하 버림

○ 지원수준: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~월 80만원 지원

\*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음
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   | 지원기간 | 회차별 지원액(3개월 단위) | 총 지원액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비<br>제<br>조<br>업 | 우선지원대상 기업 | 1년   | 240만원           | 960만원   |
|                  | 중견 기업     | 1년   | 120만원           | 480만원   |
|                  | 대규모 기업    | 1년   | 120만원           | 480만원   |
| 제<br>조<br>업      | 우선지원대상 기업 | 2년   | 240만원           | 1,920만원 |
|                  | 중견 기업     | 2년   | 120만원           | 960만원   |
|                  | 대규모 기업    | 1년   | 120만원           | 480만원   |

\*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○ 지원인원 한도: 없음

○ 지급기간 및 주기: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
(다만,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)

\* 월할 계산하지 않음

## 2.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

○ 지원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
\* 지원 제외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○ 지원요건

- 교대제 도입, 실근로시간단축,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

\* (제도 도입·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) - (제도 도입·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)

○ 지원수준: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,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, 월 최대 40만원 지원

\*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(사업주가 최소 2.5만원 부담)일 경우만 지원

(ex. 사업주가 12.5만원을 더 준 경우, 정부지원금 10만원, 사업주 부담 2.5만원)

○ 지원인원 한도: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

○ 지급기간 및 주기: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

(다만,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)

## □ 청년·중장년·여성 등 대상별 지원과 연계

- (청년추가고용장려금) 소 업종의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, 연봉의 1/3 수준(900만원)을 3년간 지원
  - ▲ (규모) 3년간 2,700만원(1인당 900만원)
  - ▲ (최저 고용요건)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, 30~100인 미만은 2명 고용부터 지원, 100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지원
- (청년내일채움공제) 중소·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2년간 근속·납입(2년, 300만원)을 전제로 정부(900만원)·기업(400만원)이 지원
  - \* 청년 300 + 중소·중견 기업 400 + 정부 900 = 2년 1,600만원
  - 2년형 제도와 별도로, 중소·중견기업 신규취업 청년이 3년 근속 시 3천만원 형성하는 '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'를 추가 신설
    - \* 청년 600 + 중소·중견 기업 600 + 정부 1,800 = 3년 3,000만원
- (신중년고용장려금)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(現 55개)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
  - \*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(최대 1년간)
- (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)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
  - \*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(최대 1년간)
- 일자리 함께하기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타 장려금과 추가 지원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 실시

### ※ 일자리 함께하기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% 지원

예) 49인 기업에서 '18.7.1일 기준 2명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총 10,980만원 지원

①일자리 함께하기: 7,200만원(2명×100만원×36개월)

②청년추가고용장려금: 3,780만원(900만원×2명×3년×70%)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(청년추가고용장려금)<br>·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(청년내일채움공제)<br>·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 (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)<br>·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신중년고용장려금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참고 1

## 청년추가고용장려금

### □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

- (현행) 성장유망업종(499개)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- ⇒ (추경이후) 원칙적으로 5인이상 중소·중견기업(사행업·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), 다만, 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
- (지원요건)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사업장 근로자수 증가

### □ 지원 내용

- (현행) 청년 3명 고용 시 年 2,0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지원
  - \* 4인 고용 시부터는 인원비례 지급(4인: 1.33명분, 5인: 1.66명분)
- ⇒ (추경이후) 청년 1명고용 시부터 年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지원  
(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)

#### < 지원 예시 >

|         | 1명 고용 | 2명 고용   | 3명 고용   | 4명 고용   | .....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30인 미만  | 900만원 | 1,800만원 | 2,700만원 | 3,600만원 | ..... |
| 30~99인  | x     | 1,800만원 | 2,700만원 | 3,600만원 | ..... |
| 100인 이상 | x     | x       | 2,700만원 | 3,600만원 | ..... |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(신청절차) 청년 신규채용(사업주) → 첫달 임금지급(사업주) → 장려금 신청(사업주) → 장려금 지급(고용센터) \* 매월 단위 신청 및 지급
- (신청방법) 온 라 인 - 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 
오프라인 -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
## 참고 2

## 청년내일채움공제

□ (개요)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'16.7월)

- '17년 참여경로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\*를 통해 본격 실시
  - '18년은 경로 폐지,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
- \* 지원목표: ('16) 1만명 → ('17) 신규 5.5만명(추경 0.5만 포함) → ('18) 신규 5만명

□ (지원대상)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
- (청년) 만 15~34세의 청년으로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  - \* '17년에는 정부취업지원(취업인턴·취성패·일학습병행훈련·고용센터알선 등) 사전 참여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전제 조건이었으나, '18년부터는 참여경로 폐지
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  - \* 단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
□ (지원방식) 2년 간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- ① (청년 본인) 청년 본인은 2년간 **300만원** 적립 (매월 12.5만원)
- ② (정부→청년) **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** 지원  
(1·6·12·18·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)
- ③ (기업→청년) **채용유지지원금 2년 700만원** 지원받아,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**400만원** 적립(순지원금 300만원)  
(1·6·12·18·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)

→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**1,600만원** 목돈 마련

<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적립구조>



### 참고 3

##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

#### □ 사업목적

- 근무체제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

#### □ 사업내용

##### ○ 지원대상: 모든 사업주

- \* 지원 제외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##### ○ 지원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)

-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
-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%(단, 대규모기업은 120%) 이상의 임금 지급
- ③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
- ④ 4대 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(근로시간비례 원칙)
- ⑥ 지문인식, 전자카드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
- ⑦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,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

##### ○ 지원수준: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~60만원 지원

| 구분       | 1개월 지원액 | 연간총액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중소·중견 기업 | 60만원    | 720만원 |
| 대규모 기업   | 30만원    | 360만원 |

- \*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##### ○ 지원한도: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로 지원

- \*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

※ 실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(일할 계산하지 않음)

## 참고 4

##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
### □ 사업개요

-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

\*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」('17.8.8) 후속조치

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규모: 2,000명 규모(86억)
- 지원대상: 「고용보험법」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신중년 적합직무
  -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

| 기준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| ① (경력 활용)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<br>② (신직업 도전) 정보통신발달·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<br>③ (역량 강화)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용이한 직무 |

### ○ 지원요건

- (채용요건) 정규직 채용(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)
  - \* 단,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
- (고용유지)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
- 지원수준: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(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)
- 지원절차: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  - \* 고용센터 「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」를 거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

## □ 제도 개요

- (퇴직금 중간정산)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허하나 예외적 사유\*에만 허용

\* ①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또는 보증금 부담, ② 근로자의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, ③ 근로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, ④ 임금피크제 도입, ⑤ 소정근로시간의 감소, ⑥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)

- (사용자의 책무)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실시,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

- 그 사실 통보,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 책무 부여

## □ 개선 방안

- (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확대)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

- (사용자의 책무 부여)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,

-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의 도입, 별도의 급여산정 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함

## □ 향후 계획

- 6월 초 공포 및 시행 예정

\*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('18.4.11~5.21) 중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
- ◇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(1년이상 + 주 15시간이상)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
- \* 퇴직급여제도: 퇴직금제도 +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 +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DC)

## □ 퇴직금제도

- (개요)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퇴직 후에 지급하는 제도
  - \*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
- (연혁) '61년,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 등을 위해 법정제도로 퇴직금제도 도입(30인 이상)
  - \* 적용범위 확대: '61년(30인 이상) → '75년(16인 이상) → '87년(10인 이상) → '89년(5인 이상) → '10. 12월(전 사업장)

## □ 퇴직연금제도

- '05.12월,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을 위해 퇴직금제도의 대체제도로 도입
  - 개별 사업장별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를 결정(퇴직금제도 유지 가능, 임의제도)
- 퇴직연금제도 종류: 두 가지 형태 중 사업장별 선택 가능(병행도 가능)
  - ① 확정급여형(Defined Benefit):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(퇴직금과 동일수준),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
    - \*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 부담수준이 달라짐
  - ② 확정기여형(Defined Contribution):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(임금총액의 1/12)이 사전에 확정 →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→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
    - \*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 급여수준이 달라짐

## ① 공공부문 조달 계약

### □ (개선) 적격심사\*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부여

\*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가격, 이행능력, 신인도의 합산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

- 입찰 시 고용부에서 발급하는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

### □ (향후 계획)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기준\* 마련·시행(하반기)

\*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개정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|
|------|---------------|

## ② 자치단체 조달 계약

### □ (개선)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대하여 평가 시 차등 가산점 부여(+1.0 내외)

- 자치단체 발주, 시설공사·물품적격심사 기준에 반영

| 현행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승인한 자 +1.0</li> <li>·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승인한 자 +0.5</li> <li>·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으로 승인한 자 +0.3</li> </ul> |

### □ (향후 계획) 개정안 마련 및 예규 개정(하반기)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|
|------|---------------|

### ③ 중소기업 조달 계약

□ (개요)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」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

○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은 입찰가격, 납품이행능력(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) 및 신인도 평가로 구성

- 특히, 신인도 평가를 통해 기술보유기업, 영세기업 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관련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

○ 현재 특허 등 기술보유기업, 소기업·소상공인,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가점부여\* 중

\* 예) 특허 인증보유(1점), 소기업·소상공인(0.75점, 1점), 신규인력채용(2~3점) 등

□ (개선) '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'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

○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일정보다 1년 이상 앞당긴 기업에 가점(3점 만점 중 2점)부여

\* 예) '20.1.1 시행예정인 50~299인 기업이 '19.1.1 이전에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 가점 부여

#### < 심사기준 개선(안) >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규채용 우수기업 (3개월 평균 5%, 6명/ 2.5%, 3명) : 3점/2점 | 현행 + <u>노동시간<br/>조기단축 기업(2점)</u> |
| 신기술인증, 조달우수제품, 성능인증 등 : 1.5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상공인, 여성고용우수기업, 장애인기업 등 : 1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(향후 계획) 신인도 가점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개정('18.7)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 |
|------|---------------|

## □ 제도 개요

- 국책은행(산은·기은·수은)의 자금공급시 일자리창출 기여 기업 우대
- 국책은행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별로 기준에 따라 일자리 관련 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
  - 최대 1%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
- \* (산은) 중소중견기업  $\Delta 0.5\%p$ , (수은) 고용자수 증가율 3% 이상 기업  $\Delta 0.7\%p$ , (기은)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 $\Delta 0.3 \sim 1.0\%p$

### <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>

| 기관명 | 지원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 은 | 고용우수기업, 고용창출우수산업, 고용창출인증기업,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|
| 기 은 |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은 |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% 이상인 기업          |

## □ 지원 방안

-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시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우대
- 국책은행의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을 정부인증 노동시간 단축 우수 기업으로 확대
  - 고용부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인증시스템 구축 선행
  -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금리·한도 등을 우대 지원

## □ 향후 계획

-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지원 우대

담당부서

·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

## □ 제도 개요

- (목적)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,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지원
- (지원규모) '18년 500억원 (긴급경영안정자금內 별도 운용)
- (지원대상)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
- (지원조건) ① 한도: 2억 원 이내, ② 금리: 3.0%(고정),  
③ 대출기간: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- (지원절차) 상담·신청 → 현장실사 → 지원결정 → 대출약정 → 실행
- (사업기간) '18.하반기 ~ 예산소진 시까지

## □ 지원 방안

-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
  -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을 '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자금'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
- \* (현행)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→ (개선)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 추가
- 노동시간 단축 조기참여기업을 '정책우선도' 평가 항목의 '성과 공유' 기업 대상으로 추가

\* 정책우선도 : 고용창출>일자리안정>성과공유>수출기업>시설투자기업

## □ 향후 계획

-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변경 (~'18.下)
- '19년 정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협의

담당부서

·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

## □ 제도 개요

- 교대제도입,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

- 총 투자비의 2/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

\* 상환조건: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,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%, 대규모기업 2%

## □ 지원 방안

-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속 추진

- 설비투자용자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 중에서 참여 가능

- 노동시간단축법 개정으로 참여 기업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 심사위원회 심사 시 우선 지원되도록 안내

\* 고용센터(사업심사 승인) → 근로복지공단(융자금 배정·관리) → 은행(대부)

## □ 향후 계획

- '19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규모 확대 추진

\* '18년 33개소 15,873백만원 → '19년 60개소 28,680백만원(증 12,807백만원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

□ 사업내용

○ 지원대상: 모든기업

- \* 지원제외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채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○ 지원요건

- 교대제도입,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(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-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)

<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용자 지원대상 시설 등>

| 투자 종류   | 지원금의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비투자비   | ·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, 기구, 사무기구,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<br>* 총 설비투자금의 10% 범위내에서 휴게시설,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|
| 시설 건립비  | ·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,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<br>* 토지 매입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 매입비  | ·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<br>* 토지 매입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 임차비  | · 일자리함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(월세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 개보수비 | ·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 전환비  | · 소유·매입·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<br>·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지원내용

- (설비투자 용자지원) 총 투자비의 2/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
  - \*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
- (상환조건)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,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%, 대규모기업 2%

## □ 제도 개요

- (목적)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 고도화 촉진
- (지원규모) '18년 3,300억원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추진기업,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·신기술 영위기업 등
- (지원조건) ① 한도: 70억 원 이내, ② 금리: 2.3% 내외, ③ 대출기간: 5~10년
- (지원절차) 상담·신청 → 현장실사 → 지원결정 → 대출약정 → 실행
- (사업기간) '18.하반기 ~ 예산소진 시 까지

## □ 지원 방안

-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기업의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우선 지원
-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조기 참여기업을 '정책우선도' 평가 항목의 '성과공유' 기업 대상으로 추가

\* 정책우선도 : 고용창출>일자리안정>성과공유>수출기업>시설투자기업

## □ 향후 계획

- 정책우선도 평가기준 개선 (~'18.下)

담당부서

·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
## □ 제도 개요

-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재해 예방활동 인정\* 시 다음 연도 산재보험요율 할인(산재예방요율제, '14.1 시행)

\* 사업주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서 제출(1년, 10%)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(3년, 20%)

\* (근거)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,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15-106호)

- 사망사고 발생, 명단공표 등 해당 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

## □ 지원 방안

- 근로시간 단축이 산재감소에 긍정적 영향\*을 미치는 점,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

\* 근로시간 1% 감소시 재해율은 전 산업에서 3.7%, 제조업에서 5.3% 감소 (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, 2005)

- 50인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이 조기 단축 시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하여 현행 사업주교육 및 재해예방 계획서 제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 요율 10% 할인

## □ 향후 계획

-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추가('18.上,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)
- 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요율 할인 근거 마련('18.下, 산재예방요율제 고시 개정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

## □ 사업목적

-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(이하 "산재예방요율"이라 한다)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4.>

## 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: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
- 지원내용: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("위험성 평가" 또는 "사업주 교육")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정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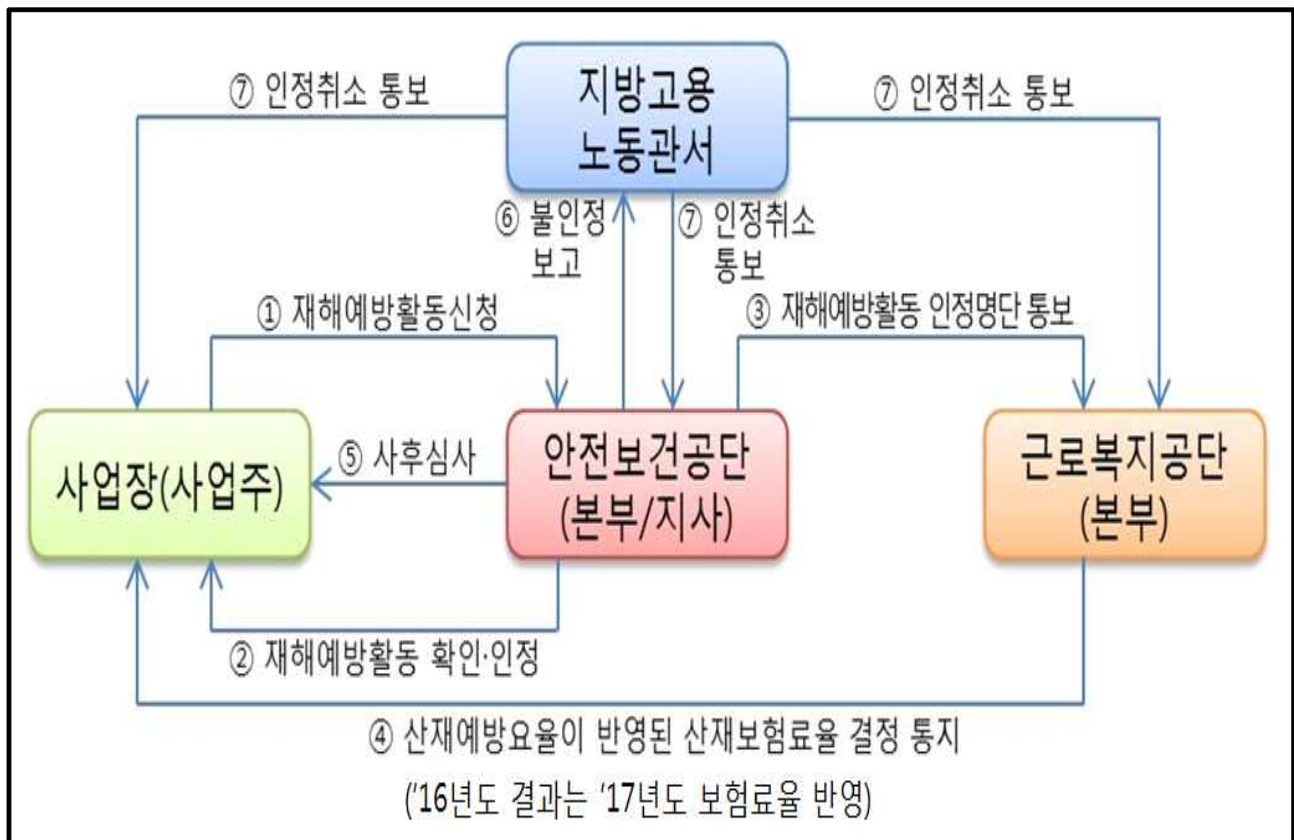
### 【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】

- (위험성평가)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·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실행하는 활동
- (사업주교육)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

- 산재보험료 인하율 — 위험성평가 인정: 20%  
— 사업주교육 인정: 10%

- 인정유효기간: 위험성평가 인정 3년, 사업주 교육 인정 1년

## □ 사업 추진체계



## □ 사업수행기관

### ○ (고용부)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

- ▶ 법·제도 운영·관리,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 인정 취소 등

### ○ (안전보건공단)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

- ▶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,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 심사 등

### ○ (근로복지공단)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

- ▶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

## □ 제도 개요

-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(E-9)을 도입

\* 외국인노동자 도입국가 및 총 도입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

-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은 점수제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 순으로 정함

\* (점수항목) ▲외국인 고용한도 대비 실제 고용인원(30점) ▲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수(30점), ▲내국인 채용인원(20점) 등

## □ 지원 방안

- (방식)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가점을 부여 함으로써 非단축 사업장보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

- 기존 가점항목(0.2~1점)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,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(-3점/5점)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수준(2점) 부여

- (효과) 고용허가 신청 현황(경쟁률 2.3:1)을 고려하면 조기단축 사업장에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\* 예상

\* ('18.1분기 고용허가 신청 현황) 104.7점 만점 중 평균 88점, 커트라인 85.2점 → 가점 2점은 전체 신청 사업장의 74.5%(5,957개소, 83.2~87.2점)의 외국인력 배정에 영향

- 점수제 가점 부여로 사업장간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 유지

⇒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효과 침해 최소화

## □ 향후 계획

-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 및 신규인력 배정 시 적용(~'18.7월)

- 향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추이 및 지원 강화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고용한도 및 총 도입규모 확대 방안 검토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

## 참고

##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배정

### □ 제도 개요

- (외국인 고용허가)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(외국인 고용한도) 고용허가를 받은 각 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설정

<업종별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 기준>

| 업 종     | 주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·서비스업 | ▪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비례(제조업: 최대 40명, 서비스업: 최대 10명) |
| 건설업     | ▪ 공사현장별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금액 비례(업체별 최대 30명)         |
| 농축산·어업  | ▪ 재배·양식면적, 운영 어선 수에 비례(농업: 최대 20명, 어업: 최대 7명)   |

- 외국인력의 배정은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별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 순으로 외국인력 배정(점수제)

<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항목>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본<br>점수항목 | ①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<br>②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<br>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<br>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고득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점 항목      | ①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고, 보험료 완납<br>② 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<br>④ 5년 연속 무재해 사업장 ⑤ SOC 사업장(건설업)<br>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<br>⑦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(농축산·어업)<br>⑧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<br>⑨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|
| 감점 항목      | ①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·점검 시 적발사항<br>② 출국만기보험 연체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<br>④ 산재은폐 사업장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노동시간 단축기업 지원

-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상 가점을 부여(2점)하여 외국인력 고용허가 시 우대
  - \*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농·어업 사업장은 가점 미부여
  - \*\* 노동시간 단축 법정 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만 가점 부여

## □ 제도개요

- (추진배경) 기업의 일자리창출·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인정·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
- (대상)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고용의 질 개선 실적이 탁월한 기업
- (선정방법) 국민추천, 지방노동관서 현장조사,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이 우수한 기업 발굴
- (우대 혜택) 인증패 수여, 금융·정책자금 지원, 세액공제, 세무조사 유예 등 행·재정적 지원

## □ 지원 방안

- ‘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’ 선정 시 ‘노동시간’을 현장조사 항목에 포함
  - ‘노동시간’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의 질을 개선한 기업 선정 시 우대

## □ 향후 계획

- ‘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’ 현장조사 항목에 ‘노동시간’ 반영·시행(‘18.하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

□ 일자리 으뜸기업 인센티브 지원

-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
- 금융우대, 세무조사 유예, 세액공제 등 행·재정적 지원 및 홍보

| 구 분          | 인센티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융           | ○ 신용평가·금리 우대,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,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무조사         | ○ 세무조사 유예, 관세조사 유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액공제         | ○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,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부조달         | ○ 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평가 가점부여, 근로환경개선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, 정규직 채용 우수제품업체 인센티브 지원       |
| 정부사업<br>가점부여 | ○ 고용창출·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,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, 물품적격심사시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 |
| 마케팅지원        | ○ 수상기업·대표자 등 일괄 홍보(신문, 일자리위·관련부처 홈페이지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

① 1단계 후보기업 발굴(3월)

- 고용보험 DB: 규모별·산업별로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5배수 추출
- 국민추천 및 고용노동지방관서 현장 발굴: 고용의 질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

② 2단계 후보기업 선정(4월)

- 근로기준, 산업안전, 남녀고용평등, 공정거래 등 법 위반 사항 및 신용평가 조회
- 2단계 후보기업(현장실사 대상 기업 등) 약 2배수 선정
  - 고용증가, 업종 분포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DB를 통한 발굴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선정
  - 국민추천 및 지방관서 현장발굴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기업 발굴

③ 지방노동관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등 의견조회(4월)

④ 선정심사위원회\*에서 일자리 으뜸기업 최종 선정(5월)

\* 구성: (위원장) 차관, (위원) 노동계, 경영계, 고용·노동전문가 등

## □ 제도 개요

-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(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 활용 등)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공공기관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('08년~)



- (인증기준) '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'(여가부 고시)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\*\* 부여

\* 최고경영층의 리더십(20점), 가족친화제도 실행(60점), 가족친화경영 만족도(20점), 가·감점(대기업·공공기관 10점, 중소기업 15점)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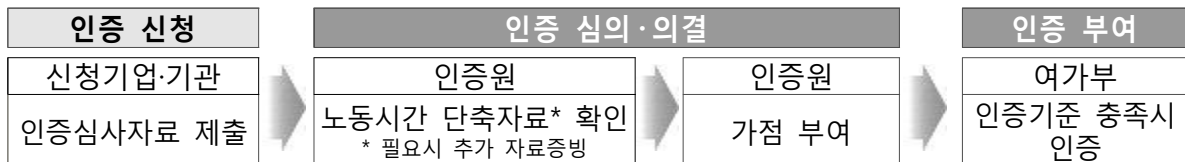
\*\* 대기업·공공기관 70점, 중소기업 60점 이상

- (인증현황) 14개사('08) → 522개사('13) → 2,802개사\*('17)

\* 중소기업 1,596개사 /대기업 335개사 /공공기관 871개사

## □ 지원 방안

-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부처간 협업으로 양 제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
⇒ '노동시간 조기 단축제도' 도입 기업 우대(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)
- 노동시간 단축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, 가점 부여



## □ 향후 계획

- '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'(여성가족부 고시) 개정('19.4월)

- '19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적용

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|
|------|---------------|

## □ 제도 개요

- 교대제 개선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여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
- 전문 수행기관\*을 선정하여 컨설팅 희망(노사합의 요건) 사업장 대상 장시간근로 등 10개\*\*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('18년 1,050건 목표)

\* 노사발전재단, 시애틀컨설팅, 한국생산성본부, 능률협회컨설팅, 공인노무사회

\*\* ①장시간근로 개선, ②임금체계 개선, ③평가체계 개선, ④비정규직고용구조 개선, ⑤평생학습체계 구축, ⑥작업조직·환경 개선, ⑦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, ⑧고용문화 개선, ⑨일가정양립, ⑩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

## □ 지원 방안

- 지청·지노위와 수행기관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장시간근로 취약사업장 적극 발굴 및 컨설팅 집중 지원

\* 장시간 근로개선 분야 컨설팅 → 본예산 목표 200건, 추경 450건 추가 편성

- 업종·분야별 우수사례 모델화(매뉴얼) → 기업 자체 개선능력 강화
- 「특례제외업종 장시간근로개선 매뉴얼」 제작·배포 추진

\* ① 노선버스업종('18.7.1 68시간 단축 적용) 매뉴얼 제작 진행 중<노사발전재단, 5월>

② 5개 수행기관별 매뉴얼 개발 추진<~12월>

## □ 향후 계획

- 컨설팅 지원 계속(4월~), 매뉴얼 제작·배포(~12월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

## 참고

##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

### □ 목적

- 장시간근로·고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

### □ 지원 내용

- 컨설팅 희망(노사합의 요건) 사업장 대상 장시간근로 등 10개\*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

| 구분          | 사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관          | 고용노동부,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컨설팅<br>영역   | ①임금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무·능력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, 정년연장 실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②평가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·보상체계, 직급·승진체계, 각종 규정 정비 등 노사 상생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③장시간근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대근무제도 개편,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한 실근로시간단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④평생학습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평생학습 Master Plan 수립, 평생학습체계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, 경력개발 및 퇴직 프로그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⑤노사파트너십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영전략에 따른 노사전략 수립, 노사상생의 파트너십 기반 구축,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사업장의 변화관리 체계 구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⑥작업조직·작업환경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무순환제 및 유연배치전환 등 유연한 작업방식 및 현장 책임 경영으로의 작업조직 개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⑦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⑧고용문화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위한 적합직무(직종)개발, 직무재설계 및 관련규정 정비(취업규칙 등), 조직(근로)문화 개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⑨장년고용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(승진, 직무, 직무체계 등), 장년근로시간 단축, 장년적합직무 발굴,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(멘토제), 임금피크제 도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⑩일가정양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인 미만 기업의 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(일·가정 양립 진단지표 활용)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고용(조직)문화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(여성인력 활용 방안 및 일·가정 양립제도 설계를 지원) |
| 신청자격        |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범위        | 컨설팅 무료 지원<br>* 다만, 상시근로자수 1,000명 이상 사업장 경우 총 컨설팅 비용의 30% 자부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컨설팅<br>수행기간 | 사업장 기준 8주~10주<br>* 패키지 시 15~21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①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선 지원

□ (개요) 현장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기술·노하우가 기업내에서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게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

○ (지원내용)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내부 인력에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 및 기술체계화(매뉴얼화) 지원

\* (독일) 인더스트리 4.0 제조혁신의 주요과제로 ‘앱시스트(숙련 근로자의 노하우를 VR, AR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DB화)’ 추진

○ (지원대상)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○ (지원규모) 총 728백만원, 80개 사('18년)

□ (개선) 현행 사업을 활용하여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우선 지원('18~)

○ ‘일자리함께하기’(고용부) 사업 선정기업 등 노동시간 단축기업에게 현장평가 가점(최대 15점) 부여

□ (향후 계획)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사업 착수('18.7~)

담당부서

·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

## ② 공정·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

□ (개요)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 
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

○ (지원내용) ①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, 제품생산 시간 및  
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(최대1년, 5천만원)

- ②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 
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(최대1년, 1억원)

○ (지원대상)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\* 단, 공정개선 과제는 공장등록증,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

□ (개선)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등을 노동시간  
단축 기업에 우대 가점 지원

○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 : 356.3억원, 1,010개 기업

○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: 87.5억원, 105개 기업

□ (향후 계획)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가점 추가('19. 상반기 ~ )

담당부서

·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

## ①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

### □ 사업 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
-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이와 연동되는 제어기, 센서 등의 설치와 기존 구축 시스템 고도화 지원 ('18년 782억원)
  - 신규 구축지원 : 기업당 5천만원 한도, 총사업비의 50% 이내
  - 스마트공장 고도화 : 기업당 1억원 한도, 총사업비의 30~50%(총 사업비 1억원 이내 50%, 초과분 30%)

#### <스마트공장 지원계획>

| 구분         | ~'17년 | '18년  | '19년  | '20년  | '21년  | '22년  | 합 계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지원<br>(개소) | 5,003 | 2,000 | 2,500 | 2,500 | 3,000 | 5,000 | 20,003 |

### □ 지원 방안

- 노동시간 단축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신규 도입 시에도 스마트공장 고도화(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)까지 지원 허용 및 가점 부여(19년 上~)

### □ 향후 계획

-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공고 시 근로시간 단축기업 허용 및 가점 반영 ('19. 상반기 ~ )

담당부서

·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

## ② 스마트 공장 핵심기술 R&D

### 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개발 지원

\* 국정과제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

- (사업기간) '18~'20년 ('18년 예산 40억원)
- (지원조건) 출연(민간 매칭)
- (시행주체) <전담> 산업기술평가관리원 <수행> 공공연구기관, 대학, 중소·중견기업

### □ 주요 지원 내용

| 지원분야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도화 핵심기술 |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기반·핵심기술개발                  |
| 패키지 플랫폼  | 통합SW 등 제공을 위한 스마트공장 패키지 플랫폼 개발              |
| 모델공장     | 한국형 고도화 표준 모델공장(대표·데모공장) 개발                 |
| 품질평가 체계  |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성능 및 품질평가 체계 개발('18년 1개 과제) |

### □ 향후 추진방향

- 현장 수요와 구현 가능성에 따라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R&D 지원

|       | 단기(요소기술 국산화/고도화)                  | 중기(사람중심·협업 공장)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기(초연결 제조 밸류체인)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급 기업 | ·솔루션 연결경쟁력 확보<br>·모듈 수준 인증체계 개발   | ·AR/VR, 웨어러블 로봇 등 사람-기계 제조협업 기술        | ·AI 기반 스마트공장<br>·가치창출 제조 플랫폼 |
| 수요 기업 | ·업종별 대표공장 실증                      | ·사람 중심 디지털 제조 환경 실증                    | ·밸류체인 연결                     |
| 기대 모습 | ·공장내 SW-HW의 디지털화 및 통합 → 제조 생산성 향상 | ·작업현장의 디지털화 → 작업자의 능률 향상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 | ·공장·업종·지역간 협업형 제조 밸류체인 구축    |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
### ③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

#### 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주요업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및 상호운용성 시험·성능평가 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기업 경쟁력 제고
- (사업기간) '16~'20년 ('18년 예산 18.66억원)
- (지원조건) 출연(민간 매칭 30% 이상)
- (구축지역) 경기 안산
- (시행주체) <주관> 스마트공장 추진단 <참여> 전자부품연구원, 경기TP

#### □ 주요 사업 내용

- (기반구축)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\*의 실제공장 적용前 비교 시험 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\*\*

\* 고도화기술: 디지털트윈, CPS, IoT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협업로봇, 3D프린터, AR/VR

\*\* 가상생산 및 시생산 지원 관련 업종별 특화 장비, 표준상호운용성 시험 환경 구축 장비, 제조ICT플랫폼 구축 장비 등 총 32종 장비 제작·구축

- (구축방안) 국내외 공급기업 역량을 집중, 전품연, 추진단과 주요 기업 간 장비 협업 제작을 통해 구축

- 현재('17년) 25개사 구축에 참여 중, '20년까지 40개사로 참여 확대

\* 국내 : 삼성SDS, LS산전, 한화테크윈, 현대로봇틱스, 미라콤, 현대위아 등

\* 국외 : 지멘스(독), 로크웰오토메이션(미), 슈나이더일렉트릭(프), GE(미) 등

- (연계협력) 글로벌 데모공장(獨, 美)과 연계된 공장-공장연계 장비 구축 및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

#### □ 향후 추진방향

- (테스트베드 확대) 스마트공장 핵심기술(CPS·빅데이터·IoT 등) 테스트, 상호호환성 검증 등을 위한 데모공장 확대 추진(지역별·업종별 등)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
#### 4 전문기술 인력 양성

##### 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주력산업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석·박사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·운영, 현장실습 수행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
- (지원기간) 5년 이내
- (수행기관) 대학, 연구기관, 협회, 단체 등 공공 성격의 비영리 기관
- (지원내용)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,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등

##### □ 사업 내용

- (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)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\*별 고급인력양성  
\* 미래형자동차, 스마트공장, 드론 등 20개 업종 포함
- (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)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공통기반분야\* 인력양성  
\* 디자인, 기술경영, 엔지니어링 등 5개 분야 포함
- (인적자원생태계조성) 인력수급통계,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

##### □ 최근 3년간 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| 구 분        | '15년   | '16년   | '17년   | '18년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예 산        | 46,209 | 48,361 | 63,620 | 80,110 |
| 수혜인원(학위과정) | 1,678  | 2,184  | 2,335  | 2,200  |

※스마트공장 운영·설계 인력양성 ('18년 25억원) \* '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'사업의 일부

- (개요) 스마트공장 수요·공급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·운영 및 석·박사 대학 당 20~30명/년 내외 양성
- (추진방향) 스마트공장 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석·박사 교육과정 확대 ('17년 3개 대학 → '18년 4개 대학)

\* 경희대.산업기술대.충북대에 '18년 동아대 추가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
## □ 제도 개요

- (기초노동질서)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법령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법 위반(최저임금, 임금체불 등) 여부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\* '18년 6,000개소 목표
- (업종별 자율준수) 노·사 단체 및 전문가 단체에서 업종별 노동관계법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·지원  
\* '18년 병원업종 50개소, 소규모 도·소매, 음식점업 등 600개소 목표
- (노동법 교육) 신설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실시 \* '18년 사업주 교육 4,000명 목표

## □ 지원 방안

- (업종별 자율준수)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노동시간 위반 사례가 많은 업종에 대해 노동시간 자율준수 집중지원('18.7월~)  
\* 지원대상 사업장(안): 노선버스, 음식점, 숙박업(각 500개소) 등 3개 업종
- (노동법 교육 및 홍보)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 교육 및 홍보 실시('18.7월~)
  - 신설 사업장 등 노동법 준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관련 사업주 교육 실시(5,000명)
  - 5~300인 미만 사업장(약 70만개소)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리플렛 등 홍보물 전송(팩스 및 우편)

## □ 향후 계획

- 사업계획 공고(5월) → 위탁 사업자 선정·계약(6월 초) → 사업 실시(7월)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
□ 사업목적

-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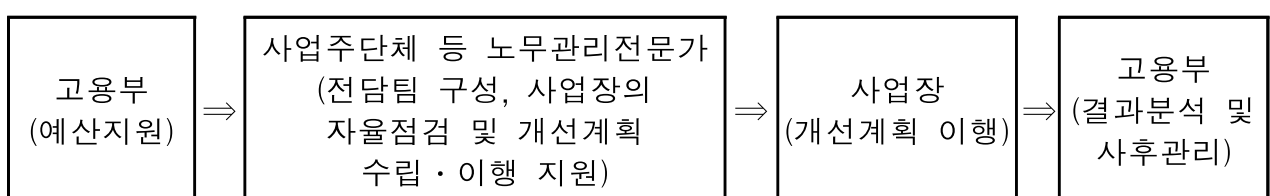
□ 사업내용

-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·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,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
- 사업기간: 2018.1~10월
- 예산규모 및 사업목표량: 1,808백만원, 전국 6,000개소

□ 지원대상 사업장

-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
  - \* 근로계약서·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 우선 지원
- 신청사업장
-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(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)
- 신설사업장(근로자수 제한 없음) 등
  - \*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장,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

□ 사업추진체계



## □ 제도 개요

- (근무혁신 인센티브제) 노동시간 단축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
- (추진경과) 「'18년 경제정책방향」에 대책으로 포함
  -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8.4~10월)

## □ 지원 방안

- ① 참여기업이 '노동시간 단축', '유연근무 활용'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면, ②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③ 차등적으로 인센티브 제공

### < 인센티브제 단계별 세부구성안 >

| 단 계          |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무혁신<br>계획수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 「근무혁신 계획」 수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유연근무 도입·활용, 연차휴가 활성화, 교대제 개편 등</li> </ul> </li> <li>▪ 근무혁신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, 계획 이행</li> </ul> |
| 평가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, 실행 정도, 성과 등을 평가하여 S, A, B 등 그룹으로 구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센티브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세제지원, 근로감독 면제, 컨설팅 우선지원 등 <u>그룹별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설계</u>하여 기업이 상위 그룹을 획득할 유인 확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홍보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근무혁신 마크를 부여하여 구인·구직 취업 포털, 제품·서비스에 활용, S등급의 기업은 근무혁신 30대 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례 확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향후 계획

- 「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」 모델 개발('18.下)
-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 「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」 시범실시('19)
- 「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」 확산('20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
## □ 제도 개요

- 유연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일·생활 균형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('16~)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시차<br/>출퇴근제</b> | 1일 8시간,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선택<br/>근무제</b>  |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(주 단위)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|
| <b>재량<br/>근무제</b>  |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             |
| <b>재택<br/>근무제</b>  |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원격<br/>근무제</b>  | 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        |

-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, 주 1~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 최대 1년간 지원

## □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

-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(중소→중소·중견, '17.9월), 선택근무제 지원요건 완화('18.2월) 등 제도 개선
- 유연근무제 활용기업이 노무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·배포('18.3월)
- ⇒ 제도개선, 인식개선 홍보 등 노력으로 유연근무 지원실적 대폭 증가

\* 지원인원: ('16)657명 → ('17)3,880명 → ('18.4월)3,796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

## □ 향후 계획

-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, 인식개선 캠페인, 인사담당자 대상 설명회, 사업주단체와 연계한 사업 안내 등 추진
- 유연근무제 우수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('18.下)

**담당부서**

·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
□ 사업목적

-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·확대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·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

□ 사업내용

- 유연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

<유연근무제 유형>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차출퇴근제 | 1일 8시간,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택근무제  |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(주 단위)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|
| 재량근무제  |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             |
| 재택근무제  |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격근무제  | 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        |

○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

- (지원대상)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 또는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의 사업주
- (지원수준)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

| 기준   | 연간 총액   |        | 1주당 지급액 |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     | 주 3회 이상 | 주 1~2회 | 주 3회 이상 | 주 1~2회 |
| 지원금액 | 520만원   | 260만원  | 10만원    | 5만원    |

※ 전체 피보험자수의 30%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(단,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)

## ○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

- (지원대상) 재택·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, 설비·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의 사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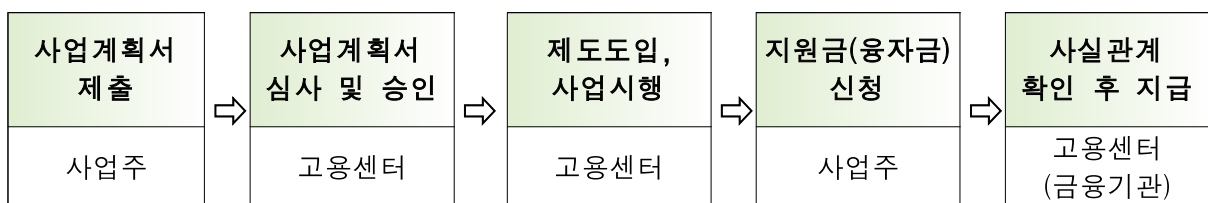
| <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종류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방식  |
| 시스템<br>구축비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안 시스템</li> <li>▪ 내부메일,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</li> <li>▪ 취업규칙 변경,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·노무 관리 비용</li> <li>▪ 인사담당자 교육·훈련 비용</li> <li>▪ 통신비,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</li> </ul> | 직접 지원 |
| 설비·장비<br>구축비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재택·원격근무용 통신 장비</li> <li>▪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</li> </ul> * 단, 건물·토지 구입·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융자 지원 |

- (지원내용)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,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/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융자 지원

\* 융자 조건: 3년 거치, 5년 균등상환(이율: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%, 중견기업 연 2%)

| <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 예시>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A   |                | 기업B   |                | 기업C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 투자 | 지원             | 기업 투자 | 지원             | 기업 투자 | 지원             |
| 계<br>(투자 총액)              | 8천만원  |                | 8천만원  |                | 8천만원  |                |
| 시스템구축                     | 6천만원  | 2천만원<br>(직접지원) | 4천만원  | 2천만원<br>(직접지원) | 2천만원  | 1천만원<br>(직접지원) |
| 설비·장비구축                   | 2천만원  | 2천만원<br>(융자지원) | 4천만원  | 4천만원<br>(융자지원) | 6천만원  | 4천만원<br>(융자지원) |

## □ 사업추진체계



## □ 제도 개요

- (대상)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, 기간제·단시간·파견·일용노동자,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 등
- (지원) 1년 200만원(5년간 최대 300만원) 훈련비용\* 지원
  - \*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등은 NCS 기준금액 100%, 대규모기업 45세 이상 80% 지원
- (절차) 대상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노동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희망 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원

## □ 지원 방안

-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되는 개인시간을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
- 대기업 노동자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선정하여 우선 적용
  - \*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동자를 선정하여 지원
  - \* 4대 사회보험료 월보수총액(국세청신고기준)으로 비교분석 중

## □ 향후 계획

- 데이터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(~5월) → '19년 예산편성시 반영(5월~)→ 대기업 지원대상 확대실시('19년) → 지원성과 모니터링('19.下)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·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
## 참고

##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

### □ 사업 목적

- 우선지원대상기업,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이·전직 및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

### □ 사업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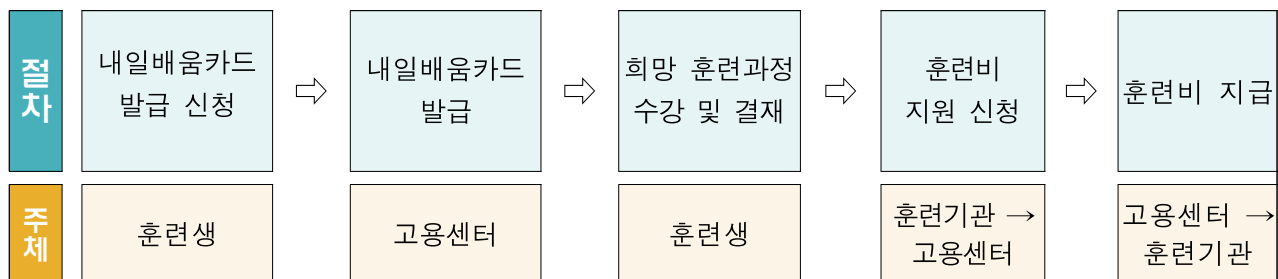
- (지원대상)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, 비정규직(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), 대규모기업 노동자(45세 이상 노동자·무급휴직자·육아휴직자·이직예정자 등)
- (지원조건)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%(대규모기업의 45세 이상, 육아휴직자는 80%) \* 음식·기타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, 외국어과정은 50% 지원
- (지원한도) 1인당 200만원(5년간 300만원)

\*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의 경우 1인당 300만원(5년간 400만원) 지원

### □ 지원 수준

| 훈련과정     | 지원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대            |
| 일반과정     | 지원금 기준금액 8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 기준금액 100% |
| 음식·기타서비스 | 수강료의 6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외국어과정    | 수강료의 50%<br>(최초 40시간을 108,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,000원 한도) |               |
| 인터넷과정    | 수강료의 10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### □ 사업 절차



## □ 제도 개요

- 노·사 단체, 자치단체,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광역행정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총 16개소)를 구성
- 훈련 수요·공급조사를 실시하고 공동훈련센터\*('18년 71개소)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실시(사업주단체, 지역대학, 폴리텍 대학 등)

\* '18. 채용예정자 200개 과정(5천명), 재직자 향상 1,114개 과정(45천명) 실시 예정

## □ 지원 방안

- '19년 훈련과정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 우선 선정
- 훈련과정 선정심사 지침에 해당 우선순위를 추가

### <기존 우선순위 고려사항('18년)>

- ▶ 취업률(양성), 수료율(향상) 등 훈련실적을 반영한 센터별 훈련과정 선정
- ▶ 경영회계사무 등 민간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한 과정 참여 배제
- ▶ 신산업·기술 과정, 취약계층(중장년, 경단녀 등) 특화과정 선정
- ▶ 지역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소공급 과정 선정
- ▶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등 필요하다고 지역 인자위에서 심의·의결한 과정 선정

### <우선순위 항목 추가 예시('19년)>

- ▶ (추가) 운수, IT, 금융보험, 방송통신업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자리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

## □ 향후 계획

- '19년도 훈련 심사 시('18.12월 예정) 위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이 우선 선정되도록 운영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

□ 사업 목적

-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하여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\*에 기반 한 재직근로자 향상 훈련 및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실시

\*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(총 16개소)에서 훈련 수요 및 공급조사 실시

□ 사업 내용

- **훈련대상:**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
- **지원대상:** 인력·훈련 수요가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공동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(공동훈련센터\*)

\* 사업주단체, 지역대학, 폴리텍 대학 등 '18년 총 71개 기관 운영 중

○ 지원내용

| 구분         |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한도<br>(연간 20억) | 지원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훈련시설·장비비   |        |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, 증·개축 비용, 장비 구매·리스 비용 등 | 연간 15억원          | 대응투자 2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프로그램개발비    |        | 직무분석,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비용 등                 | 연간 2억원           | 대응투자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영비        | 인건비    | 훈련수요 조사,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            | 연간 3억원           | 대응투자 2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일반 운영비 | 훈련수요 조사비용, 홍보비,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비용 등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대응투자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훈련비 및 훈련수당 |        | - 사업주훈련 환급방식<br>-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          |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     | 훈련수당은 1개월(120시간)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|

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공고(인력공단) → 사업계획서 제출(공동훈련센터) → 사업계획 심사(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/인력공단) → 보조금 교부(인력공단)

## □ 제도 개요

-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연수원을 운영 중

\* 연간 연수인원 : ('15) 56,739명 → ('16) 48,282명 → ('17) 47,388명

- 특히,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등을 양성하기 위한 체험형 연수\* 추진

\* 실시간 설비제어·생산정보, 빅데이터 등 스마트공장 기술 습득이 가능한 학습용 스마트공장(Learning Factory)을 안산 연수원에 1기 구축('17.11)

## □ 지원 방안

-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학습형 스마트 공장을 확대('18년 1개 → '22년 2개)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'22년까지 스마트제조분야 전문인력 5만명 양성

\* ('18) 7천명 → ('19) 8천명 → ('20) 9천명 → ('21) 1만명 → ('22) 1만명

- 도입기업의 현장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운영 교육 의무화하여 기업 당 2~3명 내외의 운영인력 확보 지원('19년)

- 스마트공장 추진전략, 요소기술 등 ICT 융합기술 교육과정 신설·확대('18년 66개 → '22년 100개)

## □ 향후 계획

- 스마트공장 전문인력과 스마트제조 중소기업 간 인력매칭 및 유휴인력 재교육·재배치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센터(HRD센터) 설치('19년)

담당부서

·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

## ①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

### □ 제도 개요

- 양질의 일자리(구인 기업) 발굴을 통해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품질 및 일자리 매칭의 만족도 제고 추진
- **☞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과(팀) 내에 일자리 발굴팀 구성·운영**
  - \* 통상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출장센터 등은 인력사정을 고려해 1명으로 구성
- 구인수요가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, 우수 제조기업 등을 ‘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’으로 선정 후 일자리 매칭 우선지원

### □ 지원 방안

- 구인수요가 시급한 노동시간 단축기업을 ‘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’으로 선정 후 우선지원 실시
  - \* '17.12월말 기준 15,570개 기업 → '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심 선정
- 지방관서별 ‘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’ 내에 일자리 발굴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여 신속한 구인수요 파악

### □ 향후 계획

- **일자리 발굴팀 운영 가이드라인\*** 지방관서 既 배포(5.10)
  - \* 중점지원대상기업 선정시 노동시장 단축 종합점검추진단과 연계하여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발굴·선정
- 구인수요가 즉각 발생하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구인수요 파악 후 일자리 발굴 적극 추진(5월말~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

## ②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

### □ 제도 개요

- 물리적 제약 등으로 고용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- 고용복지+센터 이용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회출장센터(12개) 운영
  - \* (역할) 구인·구직등록, 실업급여 인정업무, 기업지원제도 안내,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, 채용대행 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
  - \* (지역) 인천, 수원, 강릉, 원주, 김해, 진주, 대구, 대구강북, 광주, 전주, 천안, 청주
- 교통상황이 어려운 산업단지, 소규모 농공단지,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중

### □ 지원 방안

- 장시간 노동업종 사업장 밀집지역에 ‘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’ 확대 후 노동시간 단축지원과 고용서비스 복합 제공
  - \* '17년 12개소 → '18년 20개소 (장시간 노동업종 밀집지역 우선)
- 순회출장센터별로 이동수단을 임차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('18. 下 13대 → '19. 25대)
  - \* 동행면접, 구인발굴을 위한 현장방문(주2회) 등에 활용

### □ 향후 계획

-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계획 수립(지역선정 포함, '18.6월)
  - \*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설치지역에 대한 운영지침 배포 예정(6월말)
-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 운영('18.7월~)
-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차량 임차 추진(1차 '18.7월 12대, 2차 '19.1월 25대)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

- (현황)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사례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의 경직성이 높아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,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2번째로 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

\* '16년 노동시간: 한국(2,052), 멕시코(2,348), 일본(1,724), 프랑스(1,383), 독일(1,298), OECD평균(1,707)

- 또한,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,
- ▲ 300인 이상: '18.7.1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'19.7.1.부터 시행),
  - ▲ 50~300인 미만: '20.1.1, ▲ 5~50인 미만: '21.7.1
-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.7.1.~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
- 장시간 근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유연노동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중한 접근 필요

- (향후계획)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산업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, 하반기 실태조사 시작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

\*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은 노동부장관에게 22년말까지 탄력적노동시간제 개선 방안 강구 의무를 부과

담당부서

·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

## □ 탄력적 근로시간제(제51조)

-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(단위기간)의 **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**

\* 연장근로(12시간)는 별도로 가능

- 운영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‘2주 이내’와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한 ‘3개월 이내’가 있음

\* (예) 1주: 48시간 - 2주: 32시간 → 1주차 40시간을 넘는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미발생

\* (활용) 계절적 업종(빙과류제조업 등),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(接客업 등)

## □ 선택적 근로시간제(제52조)

-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각일, 각주의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 자유에 맡기는 제도

\* 자율출퇴근제(출·퇴근시간만 변경), 시차출퇴근제(대고객 업무 등 필요에 따라 회사가 결정) 등과 유사하나, 일일 노동시간 조정 등 더 유연하게 활용 가능

\* (장점) 업무 효율성 향상, 육아, 학업 병행 등 일-생활 균형 지원

## □ 재량 근로시간제(제58조제3항)

-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(시행령에 위임)에 한해서 노사가 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

\* (예) 신상품·신기술 연구개발, 인문·자연과학 연구/정보시스템 설계·분석/기사의 취재, 편성, 편집/의복·공업제품·광고 등의 디자인/방송·영화 등 PD, 감독 등

\* (장점) 근로자 업무재량 인정, 실 노동시간 관련 논란 해소

